2025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선도형, 진입형) 공고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 (선도형, 진입형)
ㅇ 사업목적 : 인공지능과 신기술 융복합 활성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및 산업 성장 도모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5. 4. 15 ~ 2025. 11. 30.까지 (7.5개월)

지원내용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선도형, 진입형)]

유형	선도형	진입형
사업 내용	AI(인공지능)과 연계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국내·외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업의 선도형 인공지능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	AI(인공지능)과 연계한 신규 시장수요 창출 및 초기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규모 시장 도약 콘텐츠 제작 지원
지원 규모	**최대 7억 원 이내 x 5개 과제 내외**	**최대 2억 원 이내 x 8개 과제 내외**
	※ 지원 과제 수는 과제 수 및 지원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컨소시엄(주관/참여기관) 구성 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은 컨소시엄 내 자율 편성	
자부 담율	총사업비의 **30%** 이상	총사업비의 **10%** 이상
	※ 총사업비: 국고지원금+자부담금 / 산정방법: [2p. 지원비율] 참고	
지원 내용	ㅇ 콘텐츠 제작 직접 비용 ※ 인건비 편성 가능 ※ 대표자 인건비는 자부담금 편성만 가능함, 국고지원금 편성 불가능, 단, 대표자가 과제책임자인 경우에 한하여 참여율 최대 50% 국고지원금 편성 가능	
지원 대상	ㅇ **<u>주관기관은 중소기업(영리법인)</u>만 가능(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 ㅇ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은 법인사업자 가능**, 중소기업(영리법인)/대기업/중견기업/비영리법인 등 신청 가능, 다만, **<u>대기업/중견기업/비영리법인은 국고지원금 편성 불가하며, 자부담금은 편성 가능함</u>** ※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유통채널 확보 가능한 기업 간 협업 권장 ※ 세부적인 내용은 [3p. FAQ] 참고	
지원 조건	ㅇ 인공지능 콘텐츠 및 신기술융합콘텐츠 관련 제작완료 및 유통에 성공 경험이 있는 기업 **ㅇ 협약기간 내 콘텐츠 제작완료가 가능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업** **ㅇ 1개사 1개 과제에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선도형/진입형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분야	**ㅇ AI 활용 신기술융합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 지원** <유형> ① AI기반의 디지털휴먼(예: 버츄얼휴먼, 가상아이돌 등)을 활용 장르 중심형 콘텐츠 제작지원 ② AI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산업군(예: 방송, 음악, 엔터테인먼트 등)과 콘텐츠 산업의 상호융합형 제작지원 ③ AI기술과 범용기술(VR/AR/MR/XR/미디어아트 등)을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④ 그 외의 AI기술 기반이거나 활용한 콘텐츠 제작지원 등	

[선도형 제작지원 세부 안내]

선도형

지원비율

국고보조금	총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율	총사업비의 30% 이상	
최대지원금(7억) 기준 자부담액(현금) 예시	국고지원금(A)	700,000,000원
	자부담금(B)	**300,000,000원(총사업비의 30%) 이상**
	총사업비(A+B)	1,000,000,000원 이상

※ 자부담금은 십만 원 단위에서 올림, **자부담금 산정방법은 [1-3. 사업신청개요] 엑셀파일을 활용하세요.**

과제예시

<유형>
① AI기반의 디지털휴먼(예: 버츄얼휴먼, 가상아이돌 등)을 활용 장르 중심형 콘텐츠 제작지원
② AI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산업군(예: 방송, 음악, 엔터테인먼트 등)과 콘텐츠 산업의 상호융합형 제작지원
③ AI기술과 범용기술(VR/AR/MR/XR/미디어아트 등)을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④ 그 외의 AI기술 기반 및 활용한 콘텐츠 제작지원 등

< 2024년도 선도형 대표 지원작 >

NO	유형	내용
1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휴먼 활용 장르 중심형	생성형 AI, 버츄얼 휴먼을 활용한 인터렉티브 실감 뮤지컬 제작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출시
2	인공지능 기술 연계 산업군(출판)과 콘텐츠 산업 상호융합형	OCR을 결합한 증강현실 독서 콘텐츠와 책읽기 서비스 및 독서 이팩트 라이브러리 제작/출시
3	인공지능 기술과 범용기술(미디어아트) 융합형	생성형 AI 파인튜닝 모델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후, 이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제작 및 NFT ART 제작/실증

[진입형 제작지원 세부 안내]

진입형

지원비율

국고보조금	총사업비의 90% 이내	
자부담율	총사업비의 10% 이상	
최대지원금(2억) 기준 자부담액(현금)	국고지원금(A)	200,000,000원
	자부담금(B)	**22,300,000원(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A+B)	222,300,000원 이상

※ 자부담금은 십만 원 단위에서 올림, **자부담금 산정방법은 [1-3. 사업신청개요] 엑셀파일을 활용하세요.**

과제예시

<유형>
① AI기반의 디지털휴먼(예: 버츄얼휴먼, 가상아이돌 등)을 활용 장르 중심형 콘텐츠 제작지원
② AI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산업군(예: 방송, 음악, 엔터테인먼트 등)과 콘텐츠 산업의 상호융합형 제작지원
③ AI기술과 범용기술(VR/AR/MR/XR/미디어아트 등)을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④ 그 외의 AI기술 기반 및 활용한 콘텐츠 제작지원 등

< 2024년도 진입형 대표 지원작 >

NO	유형	내용
1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휴먼 활용 장르 중심형	LLM 기반 대화형 AI 캐릭터를 활용한 자체 소셜 게임 콘텐츠 개발/제작 및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출시
2	인공지능 기술 연계 산업군(음악)과 콘텐츠 산업 상호융합형	자사 인공지능 마스터링 솔루션 고도화 및 음원의 리듬, 멜로디를 분석한 목적성(테라피) 음원 제작/유통
3	인공지능 기술 연계 산업군(스토리)과 콘텐츠 산업 상호융합형	고전동화 IP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동화 콘텐츠 제작 및 스토리북 플랫폼 제작/출시
4	인공지능 기술과 범용기술(미디어아트) 융합형	자체 앨범커버/뮤직비디오 및 악보 생성 관련 생성형 AI 기술 개발 후, 콘텐츠 제작 및 자사 플랫폼에 출시

<FAQ>

1) (~ 내용/분야/기술 등)의 제작지원도 신청 가능한가요?

→ 공고문 내 지원분야를 참고하시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선도형이랑 진입형이랑 둘 다 신청해도 되나요?

→ 아니오. 공고문에 기재한대로, 선도형 혹은 진입형 중에 하나의 유형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선도형과 진입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사업내용 및 제작/상용화하고자 하는 과제 규모와 지원예산(국고지원금) 및 자부담금 규모 차이입니다.

구분	선도형	진입형
사업내용	AI(인공지능)와 연계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국내·외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업의 선도형 인공지능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	AI(인공지능)과 연계한 시장수요 창출 및 초기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규모 시장 도약 콘텐츠 제작 지원
국고지원금	과제당 최대 7억원	과제당 최대 2억원
자부담율	총사업비의 30%	총사업비의 10%

4) 자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부담금을 ~원으로 산정했는데 적절한가요?

→ 세부안내의 지원비율 예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1-3 사업신청개요] 엑셀 파일 내 자부담금 산정 방법 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고지원금에 지원금 신청금액을 입력하시면, 최소 자부담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부담금은 십만 원 단위에서 올림 합니다.)

5)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혹은 참여기관)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자부담금 총액이 자부담율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ex) 선도형 자부담금: 3억
1. (주관기관 자부담금 1억, 참여기관 자부담금 2억) → 가능
2. (주관기관 자부담금 0원, 참여기관 자부담금 3억) → 가능
3. (주관기관 자부담금 3억, 참여기관 자부담금 0원) → 가능

6) "대기업/중견기업/비영리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구분	국고지원금 편성 가능여부	자부담금 편성 가능여부
주관기관	중소법인	ㅇ	ㅇ
참여기관	**대기업/중견기업 /비영리기업**	**x**	**ㅇ**
비고	개인사업자 불가		주관기관+참여기관 자부담금 총계가 자부담율 기준을 충족해야 함

7) (~ 형태) 기업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개인사업자는 신청 불가능**하며, **주관기관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신 중소법인(영리기관)만** 가능하시고, **참여기관은 대기업/중견기업/비영리법인도** 가능합니다.

8) e나라도움에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오류)가 되지 않습니다.

→ e나라도움 시스템은 e나라도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의는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혹은 묻고답하기 게시판, 매뉴얼 카테고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5. 2. 28. (금) ~ 2025. 3. 17. (월)

ㅇ 접수기간 : 2025. 2. 28. (금) ~ 2025. 3. 17. (월) 11: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 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70-9595)

ㅇ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개요
- 사업비세부산출내역서
- 참여인력 이력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평가 시 '지역기업' 배점 항목은 주관기관만 해당**
- 중소기업확인서 (주관기관 필수, 참여기관 해당 시 제출)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폴더트리**

※ 그 외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기타 참고자료 ZIP파일 내 폴더트리 외 포함 가능(영상 등)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서면·발표평가 통한 지원대상 선정

단계	평가방법	내용	선정 과제수
1단계	서면평가	- 세부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	최종선정 과제의 2배수 내외
2단계	발표평가	- 콘텐츠 구성 및 세부사업계획 발표	최종선정: **서면(40%)+발표(60%)** **[선도형]** 5개 내외 / **[진입형]** 8개 내외 (*총 지원금 내에서 지원금 신청 규모에 따라 선정 과제수 변동가능)

* 평가 단계별 기준 점수 및 선정 과제 수는 지원금 신청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단계(**서면**) 평가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관련 서면평가 진행,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2배수 내외)를 2단계(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2단계(**발표**) 평가 : 1단계 통과 후 2단계 평가에 참여한 과제 중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통과

- 최종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서면평가 40%+발표평가 60%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최종선정 과제 협약 취소 등 대비 후순위 예비과제 선정 가능

- 사업비 조정 심의 : 최종선정 과제의 과제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및 최종 지원 금액 확정

ㅇ 평가기준

- 1단계(서면) 평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참조사항	배점
수행기관 (10)	수행관리체계 구축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사업수행계획서(수행관리체계)	5
	기관 전문성	인공지능 콘텐츠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작 등 전문성 확보 여부	사업수행계획서	5
참여인력 (10)	참여인력 확보	참여인력의 확보(정규/비정규/용역) 여부	사업수행계획서(참여인력총괄표), 참여인력이력	3
	참여인력 참여율	참여인력의 참여율 적정성	사업수행계획서(참여인력총괄표), 참여인력이력	3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 여부	사업수행계획서(참여인력총괄표), 참여인력이력	4
사업비 (10)	사업비 규모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사업비세부산출내역서	6
	사업비 조달계획	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사업수행계획서(사업비조달계획)	4
과제기획력 (30)	과제 이해도	목표 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사업수행계획서	10
	기획 완성도	기획안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여부	사업수행계획서	10
	유통 구체성	세부적인 유통계획(플랫폼 활용 등)	사업수행계획서	10
과제내용 (30)	경쟁력	시장의 타 작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사업수행계획서	15
	대중성(상업성)	일반 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사업수행계획서	15
기대성과 (10)	투자매력도	투자유치 가능성	사업수행계획서	10
합계				**100**

- 2단계(발표) 평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참조사항	배점
수행기관 (20)	기관전문성	인공지능 콘텐츠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작 등 전문성 확보 여부	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이력	10
	추진의지	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 의지, 각오	발표내용	5
	재무건전성(계량)	기업신용데이터 정보조회	신용평가결과	5
과제내용 (30)	완성도	질적으로 완성된 정도	사업수행계획서	15
	독창성	작품 내용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사업수행계획서	15
기대성과 (45)	투자매력도	투자유치 가능성	사업수행계획서	10
	경제적 성과	기대되는 매출규모	사업수행계획서	10
	대중적 성과	대중들의 해당과제 소비·향유 정도	사업수행계획서	10
	목표(성과) 타당성	제시한 목표(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사업수행계획서	10
	사회적파급효과	사회전반에 끼치는 영향력 정도(공익성, 공공성 등)	사업수행계획서	5
ESG (5)	일자리 창출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수행계획서 (일자리창출계획)	2
	지역기업(계량)	주관기관 지역 소재 기업 여부(본점 소재지 기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0점, 그 외 지역 3점	본사 사업자등록증	3
합계				**100**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지원요건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와 연구개발사업은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사업문의: AI융복합콘텐츠팀
- 김예림 주임(☎061-900-6355, yr2929@kocca.kr)
- 최하영 주임(☎061-900-6356, haay12@kocca.kr)

※ 공고 관련 문의 전화가 많은 관계로, 우선 이메일 문의를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콘텐츠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ㅇ [참고] 2025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ㅇ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해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6조)

- 1.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2.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3.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5조 및 제15조의2,「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관리하여야 함

ㅇ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관련:「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제37조)

ㅇ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관련:「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제37조, 제42조)

ㅇ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제50조)

ㅇ「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